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232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조치명령 위반 등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 | 2 |

##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연월일 : 2024. 7. 25.
3. 회부연월일 : 2024. 7. 26.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온천 보호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토지굴착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Ⅲ. 검토의견

#### 1. 조치명령 위반 등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개정안은 온천종사자가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장·군수가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내리는 조치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35조 및 제37조).

| 현행                                                                                                                                                          | 개정안                                                                                                                                                                                                                              |
|-------------------------------------------------------------------------------------------------------------------------------------------------------------|----------------------------------------------------------------------------------------------------------------------------------------------------------------------------------------------------------------------------------|
|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br>2.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br>3.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 제34조(벌칙) -----<br>-----<br>-----.<br>1. 2. (현행과 같음)<br><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제14조(동력장치 설치의 허가)<br/>제18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br/>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br/>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div><br><삭 제> |
| 제35조(벌칙)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삭 제>                                                                                                                                                                                                                            |
|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 제36조(양벌규정) -----<br>-----<br>-----<br>-----<br>제34조-----<br>-----<br>-----<br>-----.                                                                                                                                             |

| 현행                                                                                                                                                                                                                                                                                                              | 개정안                                                                                                                                                                                                                                                                                                                                                                                                                                                                                                                            |
|-----------------------------------------------------------------------------------------------------------------------------------------------------------------------------------------------------------------------------------------------------------------------------------------------------------------|--------------------------------------------------------------------------------------------------------------------------------------------------------------------------------------------------------------------------------------------------------------------------------------------------------------------------------------------------------------------------------------------------------------------------------------------------------------------------------------------------------------------------------|
| <p>(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7조(과태료) ① (생략)</p> <p><u>&lt;신설&gt;</u></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u>&lt;신설&gt;</u></p> <p>1. ~ 3.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p> | <p>-----<br/>-----<br/>-----<br/>-----<br/>-----.</p> <p>제3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br/>-----<br/>-----.</p> <p>1.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p> <p>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br/>-----.</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4조제3호, 제35조 및 제36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

정부는 경제분야 형벌이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22년 7월에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하여 경미한 위반행위는 범죄가 아닌 질서위반행위로 보아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제재로 충분한 형벌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음<sup>1)</sup>.

#### [ 개선과제 유형(예시) ]

- ❶ **(비범죄화)** 국민의 생명·안전,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 → 징역, 벌금형 관련 조항 삭제 또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
  - \* (예시) 서류작성·비치 위반, 과대표시·광고, 행정조사 거부 등
- ❷ **(합리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형벌 → 보충성 (先행정제재, 後형벌), 비례성 (위법행위와 처벌간 균형) 등 원칙에 의거 합리화\*
  - \* 형량 완화, 책임의 정도(미수/기수 등)에 따른 형량 차별화 등

개정안은 이런 경제형벌 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5백만원 이하 소액벌금형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것임.

1)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는 2022년 8월에 1차 과제로 14개 법률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2023년 1월에 국회에 제출하였고, 2023년 3월에 2차 과제로 41개 법률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이를 같은 해 5월에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23년 10월에 3차 과제로 22개 법률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개정안은 2차 과제에 해당되며, 1~3차 과제 법률 목록은 첨부자료를 참고.

## 1)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현행법은 온천종사자<sup>2)</sup>에게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주기별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sup>3)</sup> 이를 위반한 경우에 동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제19조제1항).

온천이용허가 용도의 대부분이 목욕·숙박용(93.6%)<sup>4)</sup>임을 고려하여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 및 「지하수법」 등 유사 입법례와 비교해보면,

①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②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목욕장의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개선을 명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하수 개발이용업자 및 목욕장업자 등에 비해 온천종사자에게만 과도한 벌금형이 부과되는 측면이 있음.

### 2) 「온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온천종사자”란 온천을 공중(公衆)의 목욕용이나 음용(飲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

### 3) 「온천법」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 온천종사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4) (온천이용업소 현황) 온천이용시설: 575개(2022.12.31.기준, 행정안전부)

- 목욕업 222개(38.6%), 숙박업 176개(30.6%), 숙박업 및 목욕업 겸용 140개(24.4%), 의료시설 7개(1.2%), 기타 30개(5.2%)로 집계
- 목욕·숙박용이 온천이용허가 용도의 대부분(93.6%)을 차지함.

또한, 수질·성분검사가 행정상 의무로서 불이행시 출입검사 등 추가 조치가 가능하고, 소액 벌금이 부과되는 행정상 위반행위에 대한 비범죄화를 통해 민간 경제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온천종사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과태료 전환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수질 검사 관련 유사 입법례]

| 「온천법」                     | 「지하수법」                         | 「공중위생관리법」                                       |
|---------------------------|--------------------------------|-------------------------------------------------|
| 수질·성분검사를 받지 않은 온천종사자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자 |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 300만원 이하의 벌금<br>(제34조제3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br>(제40조제9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br>(제22조제1항제1호의2)                 |

## 2) 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현행법 제15조제2항<sup>5)</sup>은 온천원보호지구(지역)에서 온천수 목적이 아닌 건설공사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토지의 굴착이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토지를 굴

#### 5) 「온천법」

**제15조(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① 누구든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가정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이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착하려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동법 제35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유사 입법례로 「지하수법」은 지하철, 터널 등 지하시설물과 대규모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굴착 공사로 인하여 유출되는 지하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sup>6)</sup>

다만, 「지하수법」은 처벌 대상을 대규모 건축공사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6) 「지하수법」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지하철·터널 등 지하시설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3.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제6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 ⑤ ~ ⑨ (생략)

**제3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조치명령 관련 유사 입법례]

| 「온천법」                                                                  | 「지하수법」                                                           |
|------------------------------------------------------------------------|------------------------------------------------------------------|
| 온천수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에<br>대한 조치명령(제15조제2항) 위반<br>* 온천수 목적이 아닌 건설공사 등 토지굴착 | 대규모 건축공사로 발생한 유출지하수<br>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br>이에 대한 개선명령(제9조의2제4항) 위반 |
| 200만원 이하의 벌금<br>(제35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br>이하의 벌금<br>(제37조의3제5호)                       |

개정안은 소액 벌금이 부과되는 형벌규정을 적극적으로 비범죄화하려는 개정 취지로 제출되었으나, 조치명령 미이행이 경우 고의성이 있으며, 벌금에서 과태료로 제재를 완화할 경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온천보호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또한, 현행법상 과태료 규정은 상대적으로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게시 의무 위반, 교육 이수 의무 위반 등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치명령 위반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적정한 과태료 금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법의 과태료 규정(제37조)]

| 과태료 금액                | 부과 대상                                                                                                             |
|-----------------------|-------------------------------------------------------------------------------------------------------------------|
| 500만원 이하<br>(제37조제1항) | 온천 굴착허가의 취소,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굴착 등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br>※ 원상회복 명령 불응 시 대집행 가능(제13조제4항)                       |
| 200만원 이하<br>(제37조제2항) |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와 음용으로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br>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br>온천종사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

참고로, 최근 4년간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위반’ 또는 ‘조치명령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사례는 없음.

[「온천법」 벌칙조항에 따른 고발 현황(2020~2024.9.)]

| 시도          | 위반 내용                        | 위반조항             | 고발일자       | 결과                |
|-------------|------------------------------|------------------|------------|-------------------|
| 부산<br>(동래구) |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br>온천수를 사용     | 온천법<br>제33조제3호   | '20.01.02. | 구약식 처분            |
|             |                              |                  | '20.12.28. | 구약식 처분            |
|             |                              |                  | '21.12.28. | 기소유예 처분           |
|             |                              |                  | '22.12.26. | 구약식 처분            |
| 광주<br>(동구)  | 온천이용허가 승인 없이 온천<br>이용        | 온천법<br>제6조 및 18조 | '21.08.31. | 진행중               |
| 강원<br>(강릉시) |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br>과장의 표시·광고   | 온천법<br>제16조제4항   | '23.03.24. | 불기소               |
| 경북<br>(포항시) |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br>온천을 이용한 자 | 온천법<br>제32조제2호   | '24.05.10. | 진행중               |
|             |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br>온천을 이용한 자 | 온천법<br>제32조제2호   | '22.12.30. | 사건종결<br>(피고발인 사망) |

※ 자료 : 행정안전부

한편, 개정안은 부칙에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개정된 경우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1조제2항·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sup>7)</sup>에 따라 형벌로도 처벌할 수 없고, 행

7)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위시법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8)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벌에 처하고, 그 이후의 행위는 신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sup>9)</sup>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36 |

---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9) 법제기준과 실제(2024, 국회사무처), p.895-896

## 첨부 1

## 1차 경제형벌 개선 과제 14건 [행정안전위 소관 1건]

| 연번 | 법률안명                           | 부처  | 상임위 | 유형              |
|----|--------------------------------|-----|-----|-----------------|
| 1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산업부 | 산자위 | 과태료 전환<br>형량조정  |
| 2  | 도시가스사업법                        |     |     |                 |
| 3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     |                 |
| 4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
| 5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위 | 정무위 | 과태료 전환<br>선행정제재 |
|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7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
| 8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토부 | 국토위 | 형벌 폐지           |
| 9  | 자동차관리법                         | 국토부 | 국토위 | 과태료 전환          |
| 10 |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                     | 기재부 | 기재위 | 과태료 전환          |
| 11 | 식품위생법                          | 식약처 | 복지위 | 형벌 폐지           |
| 1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행안부 | 행안위 | 형량 조정           |
| 13 | 화학물질관리법                        | 환경부 | 환노위 | 형량 조정           |
| 14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환경부 | 환노위 | 형량 조정           |

## 첨부 2

## 2차 경제형벌 개선 과제 41건 (행정안전위 소관 4건)

| 연번 | 법률안명                        | 부처  | 상임위       | 유형              |
|----|-----------------------------|-----|-----------|-----------------|
| 1  | 관세법                         | 기재부 | 기재위       | 과태료 전환          |
| 2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기재부 | 기재위       | 과태료 전환          |
| 3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과기부 | 과방위       | 과태료 전환          |
| 4  | 전자파법                        | 과기부 | 과방위       | 과태료 전환          |
| 5  | 전자어음법                       | 법무부 | 법사위       | 과태료 전환          |
| 6  | 온천법                         | 행안부 | 행안위       | 과태료 전환          |
| 7  | 자연재해대책법                     | 행안부 | 행안위       | 과태료 전환          |
| 8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9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           |                 |
| 10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청 | 행안위       | 과태료 전환          |
| 11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경찰청 | 행안위       | 과태료 전환<br>형량조정  |
| 12 | 관광진흥법                       | 문체부 | 문체위       | 과태료 전환<br>형벌폐지  |
| 13 | 저작권법                        | 문체부 | 문체위       | 과태료 전환          |
| 14 | 방위사업법                       | 산업부 | 국방위       | 과태료 전환          |
| 15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부 | 산자<br>중기위 | 과태료 전환<br>선행정제재 |
| 16 | 전기공사업법                      |     |           |                 |
| 17 | 전기안전관리법                     |     |           |                 |
| 18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환경부 | 환노위       | 과태료 전환          |
| 19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환경부 | 환노위       | 형량조절            |
| 20 | 건설기계관리법                     | 국토부 | 국토위       | 과태료 전환<br>형벌폐지  |
| 21 | 공동주택관리법                     |     |           |                 |

| 연번 | 법률안명                                     | 부처  | 상임위  | 유형                      |
|----|------------------------------------------|-----|------|-------------------------|
| 22 | 공인중개사법                                   |     |      |                         |
| 23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국토부 | 국토위  | 과태료 전환                  |
| 24 | 물류정책기본법                                  |     |      |                         |
| 25 | 항공안전법                                    |     |      |                         |
| 26 |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br>관한 법률             |     |      |                         |
| 27 | 선박안전법                                    | 해수부 | 농해수위 | 과태료 전환<br>형량조정<br>선행정제재 |
| 28 | 선원법                                      |     |      |                         |
| 29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      |                         |
| 30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br>등에 관한 법률             |     |      |                         |
| 31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br>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      |                         |
| 32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br>법률                 |     |      |                         |
| 33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br>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 식약처 | 복지위  | 과태료전환                   |
| 34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      |                         |
| 35 | 의료기기법                                    |     |      |                         |
| 36 | 식품위생법                                    |     |      |                         |
| 37 | 공인회계사법                                   | 금융위 | 정무위  | 과태료 전환<br>형량조정          |
| 38 | 상호저축은행법                                  |     |      |                         |
| 39 | 신용협동조합법                                  |     |      |                         |
| 4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위 | 정무위  | 과태료 전환<br>형량조정<br>형벌폐지  |
| 41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공정위 | 정무위  | 과태료 전환<br>선행정제재         |

### 첨부 3

### 3차 경제형벌 개선 과제 22건 (행정안전위 소관 2건)

| 연번 | 법률안명      | 부처          | 상임위   | 유형                   |
|----|-----------|-------------|-------|----------------------|
| 1  | 폐기물관리법    | 환경부         | 환노위   | 과태료 전환               |
| 2  |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부         | 환노위   | 과태료 전환               |
| 3  | 정보통신공사업법  | 과기정통부       | 과방위   | 과태료 전환               |
| 4  | 영화비디오법    | 문체부         | 문체위   | 형량조정                 |
| 5  | 사회복지사업법   | 복지부         | 복지위   | 기존 행정제재<br>등 활용      |
| 6  | 장애인복지법    | 복지부         | 복지위   | 선행정제재-후형벌            |
| 7  | 항만법       | 해수부         | 농해수위  | 선행정제재-후형벌            |
| 8  | 옥외광고물법    | 행안부         | 행안위   | 과태료 전환               |
| 9  | 하천법       | 환경부,<br>국토부 | 환노위   | 선행정제재-<br>후형벌        |
| 10 | 자본시장법     | 금융위         | 정무위   | 선행정제재-후형벌<br>/과태료 전환 |
| 11 | 자유무역지역법   | 산업부         | 산자중기위 | 과태료 전환               |
| 12 | 마리나항만법    | 해수부         | 농해수위  | 선행정제재-후형벌            |
| 13 | 항만운송사업법   | 해수부         | 농해수위  | 과태료 전환               |
| 14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환경부         | 환노위   | 선행정제재-후형벌            |
| 15 | 물류시설법     | 국토부         | 국토위   | 과태료 전환               |
| 16 | 교통안전법     |             |       | 과태료 전환               |
| 17 | 뉴스통신법     | 문체부         | 문체위   | 과태료 전환               |
| 18 | 불공정무역조사법  | 산업부         | 산자중기위 | 과태료 전환               |
| 19 | 수산업협동조합법  | 해수부         | 농해수위  | 선행정제재-후형벌            |
| 20 | 해수욕장법     | 해수부         | 농해수위  | 형량조정<br>선행정제재-후형벌    |
| 21 | 선원법       | 해수부         | 농해수위  | 형량조정                 |
| 22 | 채무자회생법    | 법무부         | 법사위   | 과태료 전환               |